

離婚위자로 女性에 불리

이혼을 할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.

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민법에는 이혼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도입되어 혼소송 때 이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재산이 남편 명의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주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고 있다.

이제라도 이혼 때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원칙이 없다.

다만 부활재산의 범위, 재산종전에 대한 기여도, 혼인기간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법원

이 결정하고 있다.

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현금 또는 현물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받게 된다.

또 분할재산액이 혼인 연수에 6백만원 이하인 연수에 1억원 이하인 연수에 1억원을 넘는 한

액수를 넘으면(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 1억 6천만원) 초과 부분에 대해 중의세가 부과된다.

재산분할비율에 관한 법원이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.

△지난해 5월 약사인 김모(28)씨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남편李某(30)를 상대로 낸 재산

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결혼후 증산한 재산 3천 4백만원의 50%

인 1천 7백만원을 분할 재산으로 결정했다. 김씨는 당초 남편 명의의

로 된 재산의 절반인 1억원을 청구했다. 그러나 법원은 결혼후 증산된

재산부분에 대해서만 분할 재산의 범위도 인정하고 맞벌이 부부였다는 점을 감안해 분할비율을

반반으로 정했고 위자료 5천만원도 별다른 지급하도록 했다.

△지난 1월 가정주부 鄭모씨(34)가 회사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鄭씨가 혼인기간 8년 동안 외판원과 가사

성기여도를 30%로 잡아 5천만원을 지급토록 했다.

다만 이 경우 鄭씨의 간통으로 이혼하게 돼 鄭씨는 남편에게 오히려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다.

鄭씨의 남편은 鄭씨가 간통으로 구속되면서 재산분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박상에서 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.

이 같은 판결을 토대로 볼 때 가사노동만으로 재산형성기여도를 절반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.

이혼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金三和 변호사는 법원은 가사노동의 재산형

성기여도를 30%정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기간은 거의 따지지 않고 이혼후 부양을 위한 분할비율을 명확치 않다

며 『분할청구제도 도입후 위자료액은 훨씬 줄어들고 있다』고 밝혔다.

金 변호사는 『남편명의의 재산중 가명계좌나 유가증권은 커녕 부동산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돼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다』며 『임정액수

이상은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』고 지적했다.

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『남편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고작 과세자료 정도만 통보해준다』며 『증여세부과는 위장증여나 위장상속을 막기 위한 제도이나 재산분할제도의 정착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어 일률처럼 비교세를 원칙으로 하고 위장증여나 위장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직하다』고 밝혔다.

〈曹炳來〉